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5. 8 선고 2017가단2337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4. 10.

판결 선고 2018. 5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143.5㎡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2. 10. 11. 접수 제229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소영

별지